이달의 칼럼

이 창 현

•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형사법)

• 주요 저서
- 형사소송법(제8판)
- 사례 형사소송법(제6판)
- 형사소송법 핵심판례 110선(공저)
- 형법판례 150선(공저)

로스쿨에서의 바람직한 교육 논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인다고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며, 판례의 단순한 암기로 변호사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다는 주장도 맞지 않아 법조인 양성의 큰 역할에 변호사시험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로스쿨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로스쿨 교육의 바람직한 모습이나 이를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제 각각인데, 변호사시험이 로스쿨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 같다.

먼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하여 합격률을 70~80% 수준으로 높여야만 로스쿨 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합격률 50% 수준의 현재 변호사시험은 사실상 선발시험으로 운영되어 극소수 우수한 로스

쿨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짧은 기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오로지 3년 내내 변시 합격을 위한 공부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격시험화하면 합격률이 당연히 올라간다는 보장은 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서울대의 경우에 올해 전체 합격률이 81.46%에 이르고, 고려대와 연세대도 75.82%와 73.94%였다. 중앙대의 초시 합격률이 100%이면서 전체 합격률이 72.60%이고, 재시부터 합격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을 고려하면 서울대 등 3개 로스쿨의 경우에도 초시 합격률은 거의 100%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몇 개 로스쿨의 경우에는 이미 충분히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로스쿨 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이는데, 과연 현재 바람직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아니면 위와 같은 높은 합격률이 시험공부에만 집중한 지극히 비정상적인 교육의 결과 때문일까.

다음으로 변호사시험이 판례의 단순한 암기 여부를 묻는다고 하면서 민사법, 형사법, 공법 수험서에 언급된 만개가 훨씬 넘는 판례를 외워야 변호사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민법 200개, 형법은 100개 등으로 변호사시험에 출제되는 판례를 한정하여 로스쿨에서도 그렇게 엄선된 판례를 깊이 있게 토론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궁극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오픈북 형태로 전환하여 국내외 판례는 물론이고 외국문헌까지 찾아보는 능력까지 본다면 국제화시대에 더 경쟁력이 있는 법률가를 선발할 수 있다는 개선안까지 있다.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시험 문제를 출제하여 왔으며 지금까지 객관식시험에서 극히 일부 예외가 있었을 뿐이고 대부분 중요 판례에서 출제가 되었기에 판례를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판례가 결국은 법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고, 판례의 결론에 이르는 논거를 알지 못하면서 단순 암기가 가능한지도 강한 의문이다. 또한 과목별로 판례를 한정하기도 어렵지만 기계적으로 숫자를 축소하게 되면 오히려 법학의 전반적인 공부에 지장을 주고 선정된 판례만 공부하는 편향적인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로스쿨 교육에 대한 여러 비판을 보면서 현재의 변호사시험에 개선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수준의 법조인 양성이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출처/법률신문)